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2023. 04. 0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교시인 '의와 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의 민주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여 대학 문화를 고양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선출직 및 임명직에 대한 탄핵권을 가진다.
- ④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학 자치와 본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
- ②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본회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

제7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위원회, 특별기구,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를 둔다.

제8조(특별기구)

- ①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11조(권한)

- ①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②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3조(소집)

- ①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소집일로부터 10일 전에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요구가 확정된 날에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단, 안건 발의자 혹은 그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14조(의결)

- ①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심판을 위해 개의하는 학생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의2 (탄핵심판)

- ① 탄핵심판을 위한 학생총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은 제14조 2항에 의거한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탄핵 발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즉시 심판에 착수한다.

- ③ 학생총회에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학생총회를 재소집하여 심판에 착수한다.
- ④ 탄핵심판에서 탄핵심판 대상자는 항변할 권리와 토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탄핵심판에서 발의자와 탄핵심판 대상자는 사안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증인은 탄핵심판장에 출석해 증언한다.
- ⑥ 탄핵심판 대상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 토론 요청권, 증인 소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⑦ 모든 항변과 토론이 끝난 후 표결에 부친다.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5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16조(구성)

전학대회의 구성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 대표자에 한한다.

-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 (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 ③ 각 학과/학부 학생회장(단) 및 동아리 분과장(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단, 학부제 실시로 인한 세부전공 및 반 학생회가 있을 시 학과에 준한다.)
- ④ 각 학과/학부 학년대표(단, 학년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복수의 학년대표를 인정한다. 세부적인 인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학과/학부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단, 소속 단위의 회칙에 의거하여 인준을 거친 권한대행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 ⑥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단, 소속 단위의 회칙에 의거하여 인준을 거치고 전학대회 개의 1시간 전 까지 상급단위의 확인을 필한 위임자에 한한다.)

제16조의 2(구성 공개)

- ① 의장은 제16조에서 말하는 학생 대표자 및 대리인의 전학대회 참석, 지각, 조퇴 여부 등에 대해 이름, 시간,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② 의장은 학생 대표자 및 대리인이 제출한 사유에 대해 거짓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의장)

-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 ② 본 회의의 진행은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③ 총·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를 위해 개회하는 경우 전학대회의 의장과 진행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과 임시 진행자로 한다.

제18조(소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개강 후 4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대회 10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

- ① 본회 활동의 총 노선 및 주요 사업 승인
- ② 본회 예산안 의결 및 결산안 심의
- ③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 ④ 본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 ⑤ 본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 ⑥ 중앙집행위원장·각 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소환권
- ⑦ 중앙집행위원장·각 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탄핵 발의, 심판권
- ⑧ 학칙 개정의 건의
- ⑨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⑩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위원회 간부의 소환 및 탄핵 결정

제20조(권한과 의무)

-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② 전학대회 소집 요구
- ③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집행국 등의 보고, 인준사항, 각 기구의 총학생회 예산안·결산 등이 포함된 전학대회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회 당일 배포하며, 대회 3일 이전에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한다.
- ④ 전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한다.

제21조(안건 상정)

- ①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③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 혹은 그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22조(의결)

- ①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 ② 제19조 5항의 경우 1/3 이상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토론 및 의결에 관해서는 대회 시행 세칙을 둔다.

제4장 확대운영위원회

제23조(위치)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단, 정기 혹은 임시 전학대회 개최 전의 경우 제37조에 의거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24조(구성)

-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 (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 ③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및 동아리 분과장 (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하며 학부제 실시의 경우 단과대학 회칙 상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부대표로 하고 최종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25조(의장)

-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확대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본 회의의 진행은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6조(소집)

- ①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대표자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대회 3일 이전에 대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정기 전학대회를 대체하기 위해 개의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기 개강 후 4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27조(권한과 의무)

-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② 전학대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 ③ 확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한다.

제28조(안전 상정)

- ①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3일전까지 안전을 상정한다.
- ②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개최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 ③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최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단, 안전 발의자 혹

은 그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29조(의결)

- ①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 ② 제19조 5항의 경우 1/3이상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제30조(임무 및 권한)

- ① 총·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④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의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 ⑤ 총학생회장은 기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⑥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⑦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⑧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
- ⑨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지닌다.

제31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단, 다음해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이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다음 해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선출)

- ① 총·부총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② 총·부총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전항의 경우는 전학대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총·부총학생회장의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33조(선서)

총학생회장은 취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반드시 행한다.

“본인은 ()년도 의혈중앙 총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제34조(신분 보장)

학생총회 또는 총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총·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제35조(위치)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36조(구성)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으로 구성한다. 단,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 ③ 단위의 신설, 폐지, 합병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 구성단위의 변경은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며, 그 전까지 기존의 구성을 유지한다.
- ④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선거 시까지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
- ② 본회 예산안 심의 조정
- ③ 본회 결산안 심의 조정
- ④ 집행국 업무 집행의 조정
- ⑤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
- ⑥ 전학대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심의
- ⑦ 전학대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 ⑧ 규정의 제정 및 수정
- 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각 집행국장과 산하 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파면에 대한 동의 및 탄핵 발의, 소환권
- ⑩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의결
- ⑪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38조(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 또는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9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단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중앙집행위원회

제40조(위치)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1조(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총·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42조(업무 및 권한)

- ① 본회 사업 및 예산의 집행
- ②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 ③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

제43조(부서 및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각 집행국을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제44조(총여학생회 구성에 대한 삭제 조항)

제45조(총여학생회 회장에 대한 삭제 조항)

제46조(총여학생회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삭제 조항)

제8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47조(구성)

- ① 단과대학 학생회(이하 단과대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의 학생회칙에 따라 구성한다.
- ② 단과대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 학생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제48조(단과대학 학생회장)

- ①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를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②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 학생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49조(학과/부 학생회)

- ① (구성) 학과/부 학생회는 해당 학과/부 학생회칙에 따라 구성하며 그 활동은 학과/부 학생회칙에 따른다.
- ② (학과/부 학생회장(단)) 학과/부 학생회장(단)은 해당 학과/부를 대표하며 그 선출은 각 학과/부 학생회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50조(업무 및 권한)

단과대 학생회의 업무 및 권한은 해당 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9장 동아리 연합회

제51조(구성)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든 중앙 동아리 및 그 회원으로 한다.

제52조(회장)

- ① 동아리 연합회장단은 선거권을 가진 정, 준동아리 회원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선거권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라 각 정, 준동아리별로 회장을 포함한 10인에게 주어진다)
- ② 동아리 연합회장단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53조(활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10장 각 위원회

제54조(위치)

- 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설립을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는 자치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가지며, 이는 전학대회 이상 의결단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55조(각 위원회)

- ① (위치)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총학생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 집행한다.
- ② (위원장) 각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인준한다.
- ③ (업무 및 권한) 각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고 한해 사업방향과 예산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11장 재정

제56조(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7조(회비)

- ① 본회의 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서 확정된다.
- ②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 ③ 본회의 회비 사용 관한 회계 업무는 본회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행하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8조(예산 편성, 심의 확정)

- ①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위원회는 예산안을 각 기구별, 시기별 사업 계획별로 편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기 전학대회 때 의결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위원회는 회비 사용 후 결산안을 작성하여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58조의 2(보고)

- ① 본회는 매월 초에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월별결산, 전체결산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전체결산이란 회계 연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공개 시점까지의 누적결산을 의미한다.
- ③ 공개된 결산 내역을 영구 삭제하거나 열람을 불가하게 하는 행동은 제한된다.
- ④ 회원은 필요시 결산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 3(기타재정)

- ① 기타재정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한 기부금 및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 ② 기타재정에 대한 결산 내역 및 증빙자료는 전학대회를 통해 공개한다.
- ③ 공개된 기타재정 내역을 영구 삭제하거나 열람을 불가하게 하는 행동은 제한된다.

제58조의 4(중앙감사회의)

- ① 매 학기 정기 전학대회 소집 이전까지 총학생회장은 중앙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중앙감사회의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회비 사용의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 ③ 중앙감사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으로 하되, 단위별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다.
- ④ 중앙감사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⑤ 중앙감사회의의 업무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학기 회계 가이드라인 작성(단, 가이드라인에는 예·결산안 작성 요령, 인정 영수증 및 증빙서류, 매월 결산 보고 방식, 회계 감사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단위별 회비 결산 내역 검토(단, 해당 학기 중앙감사회의 개최 이전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한 내역 대상으로 한다.)
- ⑥ 중앙감사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단과대학 및 학과(부) 회계 감사는 해당 단위의 학생회칙에 따라 구성 및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조항에 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2장 선거

제59조(피선거자격) 총·부총학생회장

- ① 본회 회원으로 4차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② 회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4개 단과대학 50인 이상 씩)

제60조(선거 시기)

- ① 총·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학생 대표자 선거 시기는 해당 단위의 회칙에 의한다.

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둔다.
- ②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과 중앙집행위원회 중 2인으로 구성하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된다.(단, 중앙집행위원회 2인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③ 중선관위는 총·부총학생회장 선거일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중선관위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 ⑤ 중선관위는 중선관위가 구성된 후부터 총학생회장단 당선 확정 공고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 ⑥ 선거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사업 진행,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2조(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0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32조 4항에 관한 사항
- ③ 중앙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선거시행세칙)

그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4조(임기)

- ① 총·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경우 당선 확정 다음날부터 기존 임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장 예산 자치제

제65조(예산자치제 규정)

예산 자치제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예산자치제 규정에 따른다.

제14장 회칙 개정

제66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표자 회의 재적 대표자 1/5이상의 발의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③ 회원총수의 1/500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

제67조(의결)

회칙 개정이 발의 시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열고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공포)

전학대회 의장은 의결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15장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제69조(정의)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70조(구성)

구성원은 총학생회 회칙 제36조(중앙운영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같이 구성되나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71조(업무 및 권한)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37조(중앙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에 언급된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72조(소집과 의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38조와 제39조(중앙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제16장 중앙비상대책위원장

제73조(정의)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힌 위원회의 대표이다.

제74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 회칙 제30조(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임무 및 권한)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선출)

- ①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중앙비상대책위원들 중 한명으로 구성된다.
- ②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재적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과반 득표자가 선출된다.(단, 최다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못할 경우 최저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 한다.)

제17장 총투표

제76조(정의)

총투표라 함은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사를 투표로 묻는 방식이다.

제77조(권한 및 목적)

- ① 본회 회원의 의견을 반영되게 하며 실현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총투표의 권한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의 모든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 방식이다.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된다.

제78조(투표관리 위원회 정의 및 구성)

- ① 투표관리 위원회 정의는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총투표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지는 조직이며 총투표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된다.
- ②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79조(진행 방식)

- ① 투표의 진행방식은 본 장에 정의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또한 새롭게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면 위의 제78조(투표관리 위원회)에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투표의 안건은 투표하기 최소 7일 전에 안건을 투표관리 위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7일에 주말을 산정한다.
- ③ 투표의 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율이 과반(전체유권자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관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2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총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총투표의 안건에 대해서 공지하고 총투표의 홍보물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0조(예산)

총투표의 예산은 학생회비로 집행한다. 다음 전학대회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밝히고 감사받아야 한다.

제81조(결과의 공고)

총투표가 완료되면 총투표의 결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총투표가 성사 되었을 시 결과에 따른 후속결과도 3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발표)

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서울캠퍼스,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학생은 각기 총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의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회칙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회칙을 따르는 것이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한 사안에 한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의결사항은 즉시 공고한다.

제4조(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한 삭제 조항)